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환경분야 법정계획 미수립**

기 관 명　울산광역시, ○구

내　　용

1. 환경분야 법정계획 미수립(울산광역시 ○○○○국 ○○○○과)

가. 습지보전실천계획 미수립

「습지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 습지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과는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같은 법령 시행일인 2005. 3. 31.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나.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미수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되거나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는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통보하면서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 시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문서로 요청(○○○○○과-25, 2016. 1. 7.)하였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과는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 1. 7. 환경부의 문서요청일로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을 수립(2012~2016년 세부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다. 외래생물 관리 시행계획 미수립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외

래생물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외래생물관리계획에 따라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과는 외래생물관리계획에 따라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같은 법 시행일인 2013. 2. 2.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다.(2018년 외래생물관리 시행계획은 정부합동감사 사전조사 이후인 2018. 2. 14. 수립·시행)

[표1] 환경분야 법정계획 미수립 현황

부서명	계 획 명	관련 법령	수립주기	수립여부
○○○○과	습지보전실천계획	습지보전법 제5조	5년	미수립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5년	〃
	외래생물 관리 시행계획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년	'13~'17년 미수립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2. 환경분야 법정계획 미수립(울산광역시 ○구 ○○○○과)

가. 환경보전계획 미수립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소관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립된 중기계획의 해당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북구 ○○○○과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도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해당 구의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2~2016년 환경보전계획은 수립·시행하였으나, 2017년 이후 환경보전계획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수립·시행하지 않았다.

[표2] 환경분야 법정계획 미수립 현황

시·군·구	계 획 명	관련 법령	수립주기	수립여부
울산광역시 ○구	환경보전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5년	미수립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시정]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을 수립,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래생물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구청장은

[시정]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